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박승진 의원
나. 의안번호: 제1997호
다. 발의일자: 2024.8.12.
라. 회부일자: 2024.8.14.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 대상시설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가 있으나, 급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비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최근의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과 주차장을 대상에 명시 하려고 함.

3. 주요 내용

- 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함(안 제7조의4제2항).
- 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4제3항).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가.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관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세분화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7조의4 제2항	• 공동주택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규정 삭제 - 급속/완속 구분 없이 자율 설치
안 제7조의4 제3항	•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공중이용시설: 전체 충전시설의 10% 이상 - 공공시설/주차장: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 ※ 설치의무 급속충전시설 최대 10개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상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5%(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¹⁾하도록 함으로써 급속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 내 충전(주차) 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점, 설치비가 비싸고 수요전력이 크며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개방해야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한 점 등을 사유로 들고 있음.

1) 2022년 4월 개정

- 또한, 올해 들어 인천 청라²⁾, 충남 금산³⁾ 등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은 극도로 증폭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주차장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등 다양한 입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⁴⁾.

- 안 제7조의4제2항은 앞서 제시한 화재 및 민원 등의 사유로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대부분의 완속충전시설이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어 화재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급속충전시설은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⁵⁾하고 있고, 민원의 핵심이 상대적으로 설치비가 비싼 급속충전시설 설치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전면 배제하는 것보다는 완속충전시설과 더불어 최소한의 급속충전시설이 상호 보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8시간 20분만에 진화되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2대가 전소됐고, 70여 대는 열손 및 그을음 피해 발생. 주민 23명 병원 치료, 단전·단수로 인해 수백 명의 이재민 발생

3) 8월 6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 발생, 소방장비 12대와 35명 투입 1시간 37분 만에 진화. 화재 차량 전소 외 추가 피해 없음

4)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잇따르는데... 처리 전망은?’(KBS 뉴스, 240817)

5) ‘커지는 전기차 혐오...‘충전기 인프라 늘리기’ 로드맵 확 바뀌나’(뉴시스, 240818)

- 안 제7조의4제3항은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설 유형이나 입지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